

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823
------	-----

2023.07.03.
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5월 30일, 최민규 의원 외 40명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5일

다. 상정결과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】

-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(2023.7.3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 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최민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·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비상설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시마다 상정안전 분야 위원으로 위원 변경(위촉)이 가능하므로, 안전 분야 특별위원 추가 위촉 규정을 삭제함(안 제13조제1항).
- 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, 심의·의결 후 위원회를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함(안 제13조제3항).
- 임시위원장 선출 규정을 삭제함(안 제14조제2항).
- 위원장의 회의 소집 규정을 삭제함(안 제14조제3항).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개최실적이 저조하고 상설위원회로서 필요성이 감소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됨.

나.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개요

- 사회성과보상사업(이하 “보상사업”)은 민간이 서울시와 체결한 사회성과 계약에 따라 민간 투자금을 유치하여 공공사업을 수행한 후에 성과 목표 달성 시 민간에게 보상하는 제도임.

-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)를 제정(2014. 3. 20.)하고, 제1호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을 추진하고 목표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3억 9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, 현재 제2호 청년 실업해소 프로젝트를 진행중임.

<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개요 >

구 분	제1호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	제2호 청년실업해소 프로젝트(추진중)
사업대상	만 6~16세 지적장애 및 경계선 지능 아동	만 19~34세 이하 취업취약계층
사업기간	2016.8.30.~2019.8.29.(3년)	2020.11.16.~2023.11.15.(3년)
소요예산	13억원	30억원(목표 달성 인센티브 별도)
사업내용	아동복지시설(양육시설·그룹홈)을 통한 경계선급 지능 아동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	직무교육, 맞춤형 취업 멘토링 등 취·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
사업목표	지적장애 및 경계성 지능이동 학습능력 개선	국내·외 취업자 또는 창업자 수
추진실적	최종 평가 대상 74명 중 39명 목표 달성	(사업 추진중)

- 보상사업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,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, 운영기관¹⁾의 부족, 객관적·정량적 성과지표 산정의 어려움 등의 현실적 문제가 있음.

다.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비상설화 (안 제13조제1항·제3항, 안 제14조제2항·제3항)

- 개정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비상설화 하면서 안건별 특별위원 추가위촉, 위원의 임기, 임시위원장 선출, 회의 소집 등 상설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.

1) 서울시 제1호와 제2호 사업의 운영기관은 동일기관인 팬임팩트코리아임.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단,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3명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위촉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제14조(심의위원회의 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,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. 이 경우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.</p> <p>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사항이 경미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</p> <p>④ ~ ⑨ (생략)</p>	<p>제13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<단서 삭제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</p> <p>제14조(심의위원회의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 <삭제></p> <p>② 시장----- ----- -. ----- 시장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~ ⑧ (현행 제4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)</p>

- 위원회는 ▶보상사업 타당성 검토 ▶운영기관 선정 ▶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▶보상계약의 체결·변경·해지 등 보상사업의 시행·관리를 위해 구성·운영되고 있음.
- 그러나 2022년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, ‘2023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’ (2023.3.31.)에 따라 비상설화²⁾를 추진함.

2) 목적·기능상 필요하나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(2022년 1년간 1회 이하 또는 3년간 3회 이하)한 위원회를 대상으로 함.

< 2023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 >

구 분		위 원 회 명		
비상설 (27)	조례 개정 (17)	창업정책위원회,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, DMC기획위원회, 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,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,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융자심사위원회,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 ,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, 서울형유급병가지원자문위원회, 소비자정책위원회,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, 찾아가는동주민센터운영위원회, 기반시설관리위원회, 사회주택위원회, 평생교육협의회, 갈등관리심의위원회, 지역상생발전위원회		
	법령 건의 (10)	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, 유통분쟁조정위원회,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, 지적재산조사위원회, 전통사찰보존위원회, 구조구급정책협의회, 공동구협의회, 산지관리위원회, 분쟁조정위원회,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,		
폐지 (8)	조례 개정	희망경제위원회, 청계천시민위원회, 물순환시민위원회,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, 서울시수소산업육성위원회, 에너지정책위원회, 시민행복위원회,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,		
통합 (38→8)	조례 개정	·인권	3 → 1	·인권위원회,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,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 → 인권위원회로 통합
		·버스	2 → 1	·버스정책시민위원회, 마을버스정책심의위원회 → 버스정책시민위원회로 통합
		·급식	2 → 1	·공공급식위원회,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→ 공공급식위원회로 통합
		·성평등	3 → 1	·성평등위원회, 성별임금격차위원회,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회 → 성평등위원회로 통합
		·노동자권익	3 → 1	·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,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위원회, 노동안전보건지문위원회 →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로 통합
		·미래사회연구	2 → 1	·지속가능발전위원회, 인구변화대응위원회 →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통합
		·기업	2 → 1	·여성기업지원위원회, 유망중소기업인증 정책위원회 → 기업지원위원회(명칭변경, 가칭) 통합
		·기금	21 → 1	·21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→ 서울시 기금총괄 심의위원회(명칭변경, 가칭)로 통합

- 위원회 비상설화 결정에 따라 안전별 특별위원 추가위촉, 위원의 임기, 임시위원장 선출, 위원장의 회의 소집 등 상설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.
- 현행 조례는 안전에 따라 특별위원을 3명까지 추가적으로 위촉할 수 있고, 위원의 임기는 3년(1차례 연임)으로, 위원장 불참 시 임시위원장 선출, 위원장의 회의 소집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- 현행 조례는 상설위원회로서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것 외에, 정기회의 개최 등을 규정하지 않아 안전 발생 시에만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.

< 연도별 위원회 개최실적 >

연도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
개최실적	2회	1회	1회	1회	3회	1회	2회	-

- 이는 다년도³⁾로 진행되는 보상사업의 성격상, 위원회의 심의는 대상 사업 선정, 운영·평가기관 선정, 사업 평가 등 사업의 초반과 종반에 집중되기 때문임.

< 보상사업 추진절차 >



- 따라서 위원회를 비상설로 변경하더라도 보상사업 논의구조가 약화 되는 등의 우려는 적은 반면, 안전에 따라 분야별 위원을 구성하여 논의의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됨.

3) 1호사업과 2호사업은 3년 주기로 진행됨.

- 다만,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사업 선정, 운영·평가기관 선정, 성과 달성 확인 등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안건 발생 후에 위원을 구성할 경우 선정과 평가의 공정성 시비가 우려될 수는 있음⁴⁾.
- 한편, 제2호 청년실업해소 프로젝트가 올해 11월 종료되므로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파악하고, 보상사업 추진의 실효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제3호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재석위원 8명, 전원찬성)

V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4) 현재 발의된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(2023.5.30.발의)에 따르면 위원회 설치 시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안건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설로 두도록 함.

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최민규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23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
발 의 자: 최민규,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 곽향기, 구미경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호, 김재진, 김종길, 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남창진, 문성호, 박상혁, 박 석, 박춘선, 서상열, 송경택, 신복자, 유만희, 윤기섭, 윤영희, 이경숙, 이병윤, 이봉준, 이상욱, 이숙자, 이종배, 임춘대, 장태용, 정지웅, 최호정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41명)

1. 제안이유

-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·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비상설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시마다 상정안건 분야 위원으로 위원 변경(위촉)이 가능하므로, 안건 분야 특별위원 추가 위촉 규정을 삭제함(안 제13조제1항).
- 나. 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, 심의·의결 후 위원회를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함(안 제13조제3항).
- 다. 임시위원장 선출 규정을 삭제함(안 제14조제2항).
- 라. 위원장의 회의 소집 규정을 삭제함(안 제14조제3항).

3. 참고사항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시장 또는 위원장”을 각각 “시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u>단, 상정되는 안전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3명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위촉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3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. <단서 삭제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</u></p>
<p>제14조(심의위원회의 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,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. 이 경우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.</u></p> <p>③ <u>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</u></p>	<p>제14조(심의위원회의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② <u>시장</u>-----</p> <p>-----</p>

를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사항이
경미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
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
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④ ~ ⑨ (생략)

----- . -----
----- 시장-----

----- .

③ ~ ⑧ (현행 제4항부터 제9항
까지와 같음)